

#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2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31일

3. 제안 이유

- 21세기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우리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법인을 설립하고,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 골자

- 법인명칭을 “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”으로 함(제2조)
- 반도체산업 및 전자정보부품산업의 육성지원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(제5조)
- 재단의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 (제6조)
-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제7조)

- 재단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하도록 함 (제9조)
- 재단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근무할 수 있도록 함 (제10조)

## 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1세기 신산업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 기술산업을 우리도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,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
- 효율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는 업무감독과 필요시 조사,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별개의 조항으로 삽입해야 할것과
- 중앙, 도, 시군 등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출연금 외에 발생하는 기타 수입금에 대한 처리사항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.
- 또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10호와 제9조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